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60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이정문 · 문진석 · 조계원
진선미 · 이상식 · 신정훈
윤준병 · 김원이 · 정준호
노종면 · 이재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제회의, 대형 축제, 스포츠·공연 행사 및 관광성수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관광숙박업소가 객실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광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과도한 요금 인상 행위로 인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불만이 증가하고 국가 관광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관광숙박업자의 숙박요금 공개 및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부당한 숙박요금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사업자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제한, 용자 회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숙박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숙박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과 숙박요금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숙박요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제회의·국제박람회·국제스포츠행사 등 국제적 문화행사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공연, 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행사
3. 국가적 규모의 문화행사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요금 관리를 위한 기간과 특별관광관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부당요금 행위 금지) 관광숙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숙박요금을 현저히 초과하여 받는 행위
2.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3. 게시 또는 공표한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는 행위
4.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위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6(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줄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조기상환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시정명령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5를 위반한 관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8(위반 사업자 공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3(숙박요금의 신고 및 공개) ① 관광숙박업자는 객실 유형별 숙박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숙박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u> <u>② 관광숙박업자는 숙박요금 및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8조의4(특별관광관리구역 지정과 숙박요금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숙박요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특별관광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u> <u>1. 국제회의·국제박람회·국제스포츠행사 등 국제적 문화행</u>

<신 설>

사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
는 대규모 공연, 지역축제 등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는 행사

3. 국가적 규모의 문화행사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
로 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숙박요금 관
리를 위한 기간과 특별관광관
리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부당요금 행위 금지)

관광숙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
한 숙박요금을 현저히 초과하
여 받는 행위

2. 숙박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

3. 게시 또는 공표한 요금과 다
른 요금을 받는 행위

4. 허위 할인 또는 가격조작 행
위

5.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침해

<신 설>

<신 설>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8조의6(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제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행정제재를 받은 관광숙박업자

에 대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의 지원사업에 제한을 줄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대

한 위반행위를 한 관광숙박업

자에 대하여 이미 지원된 관광

진흥개발기금 용자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조기상환의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7(시정명령 및 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의

3제1항, 제18조의5를 위반한 관

광숙박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u><신 설></u>	<u>을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u>③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8조의8(위반 사업자 공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공표 절차·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